

## 제 19 장 제도 규정

### 제 19.1 조 공동위원회

1.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되고,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콜롬비아의 통상산업관광부 장관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.

#### 2. 공동위원회는

가.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한다.

나. 부속서 19-가에 언급된,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·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한다.

다. 양 당사국 간 무역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.

라.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추구한다.

마. 이 협정의 적용 결과를 평가한다.

바. 이 협정의 추가적인 구체화를 감독한다. 그리고

사.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.

#### 3. 공동위원회는

가. 임시 및 상설 위원회,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.

나. 비정부 인 또는 단체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.

다. 이 협정상 권리 및 의무의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.

라.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.

마. 자신의 절차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.

바. 다음을 수정할 수 있다.

1) 당사국의 양허표에서 제외된 하나 이상의 상품을 추가하기 위한

목적으로, 부속서 2-가(관세철폐)의 양허표

- 2) 관세 감축을 가속화할 목적으로, 관세 철폐 일정에 설정된 단계적 철폐 기간
- 3) 부속서 3-가(품목별 원산지 규정)에 설정된 특정 원산지 규정
- 4) 부속서 14-가에 열거된 조달기관
- 5) 양 당사국이 발전시킬 수 있는 원산지 절차에 관한 모든 단일한 규정, 그리고
- 6) 패널에 대한 모범절차규칙, 그리고

사.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밖의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4.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, 공동위원회는

- 가.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정기 회기로 매년 회합한다. 그리고
- 나.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한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.

5.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 또는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의 회의와 관련하여 교환된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.

6. 공동위원회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·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.

## 제 19.2 조 접촉선

1.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.
2.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한쪽 당사국의 접촉선은 그 사안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공무원을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, 다른 쪽 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한다.

부속서 19-가  
위원회, 작업반 및 협의회

1. 위원회

- 가. 상품무역위원회(제2.16조)
- 나. 관세위원회(제4.21조)
- 다.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(제5.5조)
- 라. 무역기술장벽위원회(제6.9조)
- 마. 통신협력위원회(제11.16조), 그리고
- 바. 정부조달위원회(제14.18조)

2. 작업반

- 가. 농산물 무역 임시 작업반(제2.16조), 그리고
- 나. 일시적 입국 작업반(제10.5조)

3. 협의회

- 지속가능발전 협의회(제16.11조)